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03,840,495	18,115,215
일반회계	545,042,677	16,351,280
특별회계	58,797,818	1,763,935
공기업특별회계	31,155,468	934,664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1,155,468	934,664
기타특별회계	27,642,350	829,271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14,322,000	429,66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8,098,331	242,950
농공지구조성사업	3,183,933	95,518
의료급여기금운영	1,321,152	39,635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716,934	21,50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654,106천원,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6,392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,115,215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